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1066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당찬

담당변호사 조형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안문호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1. 11. 2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7,774,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774,84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47,774,8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9. 2. 8.부터 2019. 3. 15.까지 합계 3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2019가단106578호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5. “C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20. 4.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妻)인 피고와 자녀인 C, E, F이 있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별달리 없었다.

다. 2021.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고 3/9 지분, C, E, F 각 2/9 지분 비율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C은 2021. 11. 29.경 피고 및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5/9 지분, E, F 각 2/9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21. 12.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그 외에 다른 담보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2021. 12. 31.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21. 12. 3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망인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 2019. 7.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84,000,000원으로 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19. 8.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562,000,000원으로 된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1. 11. 2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한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C의 공동담보에 속하였는지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1. 11. 2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082,366,930원으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1,846,000,000원(= 1,284,000,000원 + 562,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2021. 11. 2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분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C이 피고에게 이를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의 G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2021. 12. 30.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940,660,000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468,000,000원 합계 1,408,660,000원이었는데, 이후

피고의 변제로 인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891,600,000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468,000,000원
합계 1,359,600,000원(2022. 11. 28. 기준)으로 원본이 49,060,000원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확정적으로
감소하였고, 피고가 채무인수인으로서 변제한 부분에 관해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인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반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감소된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하는 것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구체적인 가액배상 범위 산정

(1)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1. 11. 29.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82,366,9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9.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같은 액수 이상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체결일인 2021. 11. 29.을 기준으로 1,408,660,000원이다가 이후 1,359,600,000원으로 감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149,712,651원(= (2,082,366,930원 - 1,408,660,000원) × 2/9)이 된다.

(2) 피보전채권액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 3. 9.을 기준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이 53,591,452원(= 38,000,000원 × (3 + 153/365)년 × 연 12%)임은 계산상 분명하다.

(3)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

위 (2)항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1)항의 공동담보가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피고의 가액배상 범위는 위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47,774,849원이 된다.

다. 소결론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47,774,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판결 확정 이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영

별지